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7. 5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개정(2016. 1. 7.)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주체별 유지·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근거법규

가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6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)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마. 입법예고 : 2016. 5. 16. ~ 2016. 6. 7. 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해마다”를 “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기구에 대하여 매년”으로, “수립·시행해야”를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예산지원)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<u>해마다</u>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(이하 "유지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<u>수립·시행</u>해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점검,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3. 취사 및 불법 주·정차,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4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 	<p>제3조(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<u>관리주체가</u> <u>구청장인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</u> <u>년</u>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하</u> <u>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</u> <u>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</u> <u>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</u> <u>·시행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장의 정비(보충, 교체 뒤집기, 소독 등을 말한다)

5.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

6.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·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

7.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

8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예산지원)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25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6. 7. 5.(화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6. 7. 8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6. 7. 15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근배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개정(2016. 1. 7.)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관리주체별 유지·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근거법령
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6조의2(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)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이 2016. 1. 7일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별 유지·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 제 16조 2(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)에 따라 예산 지원 근거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